

[별지 제42호서식] <신설 1982.7.12>

제 호

관 광 시 설 지 정 증

상호 또는 명칭

성 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)

주 소

업 종

년 월 일부터)

(유효기간

년 월 일까지)

위의 업체는 관광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시설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한 국 관 광 협 회 장

[인]

(시 · 도)관광협회장

3006-25A

82.6.21 승인

257m×364mm

(캔트지 250g/m²)